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2. 5.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5호로 2012년 4월 30일 신흥식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사상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효행 장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의 책무 및 효의 달 지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효행교육의 장려와 효행우수자 표창(안 제5조, 안 제6조)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마.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8조)

4. 검토의견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시행되고 201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권고한바 있음.

❍ 2012년 3월말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인구는 44,070명으로 이중 독거노인 현황은 9,680명(남 3,030, 여 6,650)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서도 대상 노인 6,745명중 13.8%인 930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 제3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는 한편,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안 제6조).

- 또한 효행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마련한 것은 민간단체에 의한 효행장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안 제7조, 안 제8조).

❍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개정 현황 : 서울시, 강남구 외 6개구

관 련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8.4>